

## SAMC | LAW REVISION

## 1. 수입 주류 폐기 시 해당 용기는 재활용 가능

변질, 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 주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해당 용기는 재활용하게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도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관장이 용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Read More](#)

## 2. 보세창고 물동량 요건 완화, 물동량 줄어도 신규 특허 가능

물동량이 일시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규 특허할 수 있도록 물동량 요건을 완화했다. 특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구역 범주에 활어를 포함시켜 보세 화물 관리 기반도 강화했다. 관세청은 11월 12일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Read More](#)

## 3. 정부,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375원에서 319원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275원에서 234원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11월 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CUSTOMS &amp; TRADE TREND

## 1. 수입 목재류 세관장확인 “1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올 1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수입 목재류에 대한 세관장확인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을 1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물품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나)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Read More](#)

## 2. 난로·스키·조명 등 겨울 계절용품 안전성 검사 강화

겨울 계절용품의 수요가 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난방용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품목이다. 이에 관세청은 겨울철 필수품인 난방용품과 운동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주간을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 3. 中, 한국·일본産 니트릴 고무에 반덤핑 최종 판결

한국·일본産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결이 올 7월에 나온 예비 판결과 동일하게 나와 우리 기업의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 상무부가 조사를 착수한 후 1년 만에 한국·일본産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11월 8일 전했다. 이번 최종 판결은 올 11월 9일부터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반덤핑조사는 지난해 11월 시작해 올 7월 예비 판결이 나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FTA TREND

## 1. 미국 무역법 301조 유의사항 전달 및 애로 해소 지원 안내

최근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이하 보복관세)로,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원산지 판정시 애로사항이 예상된다. 301조 관세는 중국물품에 적용되며,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이다.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원산지 세탁)하여 미국 등 수출시,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한중 연결 미국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Read More](#)

## 2. “마침표만 남았다”RCEP, 내년 최종 타결키로

2013년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5년 반가량 이어진 RCEP 협상에서 총 7개 챕터가 타결됐고 어느덧 막바지 협상에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SEAN 10개국과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가 11월 14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RCEP 참여국 정상들은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교역과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달성하자는 협상 개시 의지를 다졌다.

[Read More](#)

## 3. EU·베트남 FTA 서명, 발효는 내년 말 전망

KOTRA 브뤼셀무역관은 EU와 베트남이 올 10월 19일 FTA 및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했다고 11월 16일 전했다. EU·베트남 FTA는 ASEAN 10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맺은 협정으로, 2012년 6월 협상개시 선언 후 2015년 8월 협상이 타결됐다. 양측은 올 8월 FTA와 투자보호협정을 별도로 분리 후 서명을 추진했다.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추후 EU·ASEAN 지역 간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 1.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지정 알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이 추가 지정되었다. 대상식품은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단, 물 등으로 추출공정을 거쳐 건조한 제품 제외한다.)이다. 대상국가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이며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이다. 해당 검사명령은 2018년 12월 24일 부터 2019년 12월 23일 까지 1년간 시행된다. 대상식품은 지정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해야한다.

[Read More](#)

##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이 1.0 이하(다만, 곡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은 0.5 이하)로 개정되었다. 또한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기준 일반실험법 등이 개정되었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되고 용어 및 문구정비와 타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었다.

[Read More](#)

## 3.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명이 수정되거나 혼합물 함량범위가 변경된 물질을 개정 고시한다. 또한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으로 정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